2024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

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설명회

2024. 2.

재외동포청 및 관계부처 합동

1. 본 자료는 2023년 11월 작성, 2024년 2월 수정되었으며, 추후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. 기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**대한적십자사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문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① **대한적십자사** : ☎ 02-3705-3795/3796/3797
   ② **관할 재외공관** : 주러시아대사관, 주카자흐스탄대사관,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, 주우크라이나대사관, 주벨라루스대사관,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,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,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, 주알마티총영사관,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
   ※ 재외공관 연락처는 공관 홈페이지 참조
3. 본 자료는 러시아어로도 비공식 번역되어 배포됩니다.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, 국문본이 우선합니다.

목 차

Ⅰ .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개요 ····· 1

1. 사업 내용 ····· 1

2. 사업 추진 근거 ····· 1

Ⅱ. 주요 지원 내용 ····· 2

1. 지원 대상 ····· 2

2. 지원 방법 ····· 2

3. 지원 사항 ····· 3

가. 항공료 및 정착비용 지원 ····· 3
나. 건설임대주택 지원 ····· 3
다. 생계비 등 생활지원 ····· 4
라. 국적 취득 및 출입국 관련사항 ····· 6

4. [참고] 현지 잔류 사할린동포 지원 내용 ····· 7

Ⅲ. 진행 일정 ····· 8

1. 연간 계획 ····· 8

2. 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 ····· 9

Ⅳ. 문의사항 ····· 12

Ⅰ.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개요

1. 사업 내용

□ **(목적)**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였으나, **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**

○ **(지원 대상)**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**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(배우자,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)**

○ **(주요 내용)**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**△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, △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, △임대주택 등 지원**

2. 사업 추진 근거

□ **(추진 근거)** 「**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**」('20.5.26. 제정, '21.1.1. 시행)

○ 상기 법 제정·시행을 통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△법적 근거 마련 및 △지원 대상범위 확대

- **(법적 근거 마련)** 한·일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'92년 최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이후 지속 실시해오던 동 사업의 **법적 근거 마련**

  ※ '15.12월 한일 정부 간 공동으로 시행해온 영주귀국사업의 종료 합의 이후 '16년부터 동 사업 한국정부 단독 실시

- **(지원 대상범위 확대)** (기존) 사할린동포 1세, 배우자 및 장애 자녀 → (확대) **사할린동포,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**

  ※ '07년까지는 사할린동포 1세만을 영주귀국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, '08년부터 사업 확대로 1세의 배우자 및 장애 자녀도 영주귀국 사업 대상에 포함

Ⅱ. 주요 지원 내용

1. 지원 대상

□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대상은 「**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**」 **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(배우자,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)**

○ **(사할린동포)** **1945년 8월 15일**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(법 제2조제1항)

○ **(동반가족)** 사할린동포의 **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**

※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바, **'사망한 사할린동포'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미해당**

- **(배우자)** **법적 배우자**만을 의미

- **(직계비속)** 사할린동포의 **8촌 이내의 직계비속**을 의미

※ 동일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중 2명 이상이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한 경우, **사할린동포가 동의한 직계비속 1명의 신청만을 접수**

2. 지원 방법

□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할린동포 중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을 희망하는 경우, **대한적십자사와 재외공관을 통해 지원 신청 필요**

※ 근거 규정 :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
☞ 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은 p.8 참조

○ **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, 통보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실시** 예정**(2024년 270명 선정 예정)**

※ 선정 대상자 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3. 지원 사항

가. 항공료 및 정착비용 지원

❑ 대상자 입국경비 지원

○ **(지원대상)**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필요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

○ **(초기 정착비)** 총 1,850,000원
- 운임(항공, 선박 등) : 1인당 450,000원 지원
※ 신청접수 당시 국내 거주자 지원 불가
- 집기비품비 : 대상자 전원 1인 1,400,000원 지원

나. 건설임대주택 지원

❑ 전국 건설임대주택 단지 중 **주거 여건이 양호**한 **퇴거 세대의 미입주된 물량을**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공급할 계획

○ 사할린동포의 **원활한 정착** 및 **입주자 관리** 등을 위해 가능한 **기존 사할린동포 입주 및 인근 단지를 중심**으로 확보 노력

❑ 임대주택 단지 배정은 사할린 동포별로 **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신청한 입주 희망지역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정**할 계획

○ 다만, 특정 지역에 **입주 신청이 집중**되어 해당 지역의 **퇴거세대 물량이 부족**할 경우 입주 **우선순위 또는 추첨을** 통하여 배정하고, **희망지역에 배정이 어려운 세대는 인근 지역 및 희망지역 외로 배정될 수 있음**

* 서울·안산시·인천논현 등 기존 사할린동포 선호지역은 퇴거세대 발생이 적어 입주가능 물량 확보에 어려움 존재

❑ 임대주택 배정은 보건복지부 **임대보증금 지원 기준**에 따라 **2인 1세대(17,700천원/세대 지원) 배정을 원칙**으로 하되,

○ 동반가족과 동거 등 **3인 이상** 거주 희망 시 임대보증금 **지원금액 조정**을 통해 **전용면적 40㎡ 이상** 주택에 **우선 배정**

- 임대주택 단지 및 동·호는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

* (추첨방식) LH 주거복지시스템 추첨 기능을 활용하여 **무작위 추첨**

다. 생계비 등 생활지원

❑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**특별생계비(1인당 매월 75,000원) 지원**

❑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**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(2인 1가구 기준 17,700,000원)** 지원

❑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**복지급여** 지원

○ 아래 법률에 따라 **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복지급여를 지원**

- **(신청방법)** 주소지 **지자체(시·군·구)로 신청**
- **(통보)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 결정·통보**

① **(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)**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(권)자 범위 특례에 따라 선정 시 해당 급여**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등)** 수령

※ **소득** : **소득평가액** 산정 후 급여 결정(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)

- **특별생계비(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)는 소득으로 미산정**

※ **재산** : 기본재산 초과분(자동차 포함)은 재산의 **소득환산액으로 미반영**

※ **부양의무자 기준** : **미적용**

☞ **사할린동포(1세 유자격자)의 경우**

- △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결정되어 해당 급여 수령, △**소득평가액**만을 기준으로 결정

☞ **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(2세)의 경우**

※ **국적 취득 시 사할린동포와 동일 특례** 적용

- 입국 후 국적취득(귀화) 전까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,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, **최대 3년 범위 내 보장**

※ 국내 적응기간 감안,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**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**

※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임에도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시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

※ [참고]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준 중위소득

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】

(단위: 원)

구분 \ 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
생계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32%)	713,102	1,178,435	1,508,690	1,833,572
의료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0%)	891,378	1,473,044	1,885,863	2,291,965
주거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8%)	1,069,654	1,767,652	2,263,035	2,750,358
교육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50%)	1,114,222	1,841,305	2,357,328	2,864,956
※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**기준 중위소득 32%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**				

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】

(단위: 원)

구분 \ 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
기준 중위소득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

② **(기초연금법)**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·재산조사를 거쳐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법에 따라 **기초연금 지원**

③ **(장애인복지법)**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**장애인연금 지원**

라. 국적 취득 및 출입국 관련 사항

❑ **영주귀국 사할린동포('45.8.15.까지 출생) 및 그의 자녀(사할린동포 2세)는** 국적판정 대상이며, 국적판정자의 배우자는 간이귀화로 국적취득 가능

※ 동반가족 중 사할린동포 2세가 아닌 동포 **3세, 4세 등의 경우는 국적판정 대상이 아니며, 귀화 신청 등 국적법상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국적 취득 가능**

○ 사할린동포 1세뿐만 아니라 2세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과의 연대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**국적보유판정을 받더라도 복수국적 유지**

- **국적판정 신청자의 배우자에 대해 간이귀화 신청 前 체류자격 부여(F-1), 한국 국민과 혼인관계 유지 중인 사람이 간이귀화(국적법제6조제2항제1호·제2호)*로 국적취득 시 복수국적 유지 허용**

* 혼인 및 국내 거주 2년 (또는) 혼인 후 3년 및 국내 거주 1년

[국적취득 유형]

대상	국적취득 유형	복수국적
사할린동포 1세	**·국적판정**	**·유지**
사할린동포 2세	**·국적판정** **·국적회복**	**·유지**(국적회복은 65세 이상만 복수국적 허용)
·국적판정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	**·간이귀화**	**· 유지**

❑ **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의 국적판정 신청 서류**

○ 국적판정신청서
○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
-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
-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혼인 또는 미혼,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
-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월일에 관한 소명자료

○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(외국 여권 사본 등)
○ 본인 또는 국내 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이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(영주귀국희망지원서 및 거주확인서 등)
○ 사할린동포법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신청서류
○ 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※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그 정부의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, 신청서류 이외에 외국어로 된 서류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

4. [참고] 현지 잔류 사할린동포 지원

❑ 사할린동포 1세 일시모국방문 사업

※ 사할린동포가 동 사업 참여 경험 없이 사망 시 그 자녀(사할린동포 2세) 대상 지원

○ △한국 전통문화 체험, △친지방문, △건강검진 프로그램 등 지원

❑ 사할린동포 2-3세 모국방문 사업 (재외동포청 주관)

○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에 따른 현지 가족과의 이산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러시아·CIS 지역 거주 2-3세 가족을 국내로 초청

Ⅲ. 진행 일정

1. 연간 계획(안)

□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결정

○ 신청 접수('24.3.4.-6.28.) →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(안) 선정('24.7.) →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

※ 한적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

□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설명회 개최('24.10. 예정)

○ 2024년도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지원내역 및 국내 정착 관련 안내 (재외동포청 주관)

□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실시

○ '24.12월 중 영주귀국 실시

※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캠프 운영('24.12.-25.2.)

○ △건강검진, △정착 지원, △국적판정 신청 및 국적취득 지원

구분	일정(안)	내용
사전준비	3.4.~6.28.	❍ 신청서 접수(대한적십자사, 재외공관)
	7~8월	❍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, 대상자(안) 선정
	8~9월	❍ 대상자 결정(재외동포청) ❍ 대상자 통보·임대주택 수요조사(대한적십자사, 재외공관)
	10월	❍ 영주귀국 대상자를 위한 설명회 개최(예정)
영주귀국	12월	❍ 영주귀국 지원(대한적십자사)
사후관리	24.12. ~ 25.2.	❍ 지원캠프 운영(대한적십자사) △ 건강검진 실시(적십자 병원 연계) △ 국내 거소신청 지원(지역 출입국) △ 국적판정 신청 및 취득 지원(법무부 협조) △ 국내 복지급여 등 신청 지원(지자체 연계)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2. 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

□ 신청 접수기간 : '24.3.4.(월) - 6.28.(금) ※ 동 기간 이후 신청서류 접수 불가

□ 신청서류

※ 제출된 서류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필요할 경우, 별도의 서류(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, 여권사본 등) 제출 요청 가능

※ **증명서**는 **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원본 또는 그 사본** 제출(**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** 필요)
(**혼인증명서는** 접수일 기준 **3개월 이내 발급분**)

※ 러시아 등 **국외 발급 증명서는 한국어 번역본 첨부** 필요(번역기관·번역자 정보 기재)

※ **접수한 서류는 반환 불가(원본 서류 보관을 희망할 경우 사본 제출 필수)**

① **공통서류** :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**신청서 1부, 사진 1매**

※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신청 접수처에서 작성 가능

② **신청자격별 구분에 따른 제출 필요 서류**

- **사할린동포인 경우** :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 **동반가족인 경우** :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,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
※ 과거 참고자료로 제출을 요청했던 **특별히 고려할 인도적 사유**의 경우, 인도적 사유 반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 감안, **2024년도 대상자 선정시에는 고려하지 않을 예정**

□ 신청 방법 및 절차

○ 신청인은 **신청 접수기간 중 신청서류를 구비, 소재지**(국외/국내)**에 따른 접수처**(재외공관/대한적십자사)**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** 필요

※ **우편 접수는 불가**하며, 본인 확인시 **필요한 신분증 지참** 필요

- **(본인 신청) 신청인 본인의 방문 신청**이 원칙이며, 사할린동포의 **동반가족 신청 시 사할린동포의 신청 확인 및 서명 필요**

※ **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모두 국외 소재**한 상황에서 동반가족 신청 시 사할린동포 동석 필요

※ **사할린동포는 국내, 동반가족은 국외에 소재**한 상황에서 동반가족 신청 시, 재외공관의 접수 이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**사할린동포의 신청 확인·서명 요청** 예정

- **(대리인 신청)** 건강상 이유 등 신청인의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, 아래 서류를 지참한 제3자 **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**
  · ① 대리 신청 사유서, ② 신청인의 위임장, ③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④ 대리인의 신분증, ⑤ 신청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공적 서류
  ※ 대리 신청 사유서 : 신청인의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

○ **(국외 신청)** 신청인 국외 소재시,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류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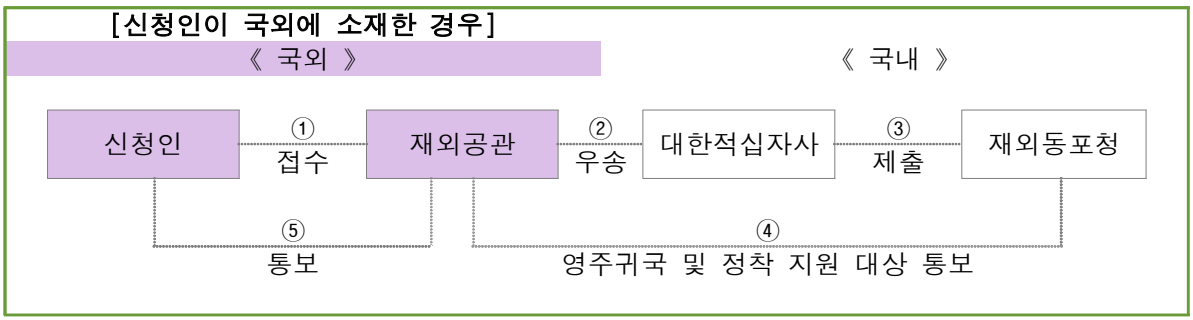

○ **(국내 신청)** 신청인 국내 소재시, 대한적십자사에 신청서류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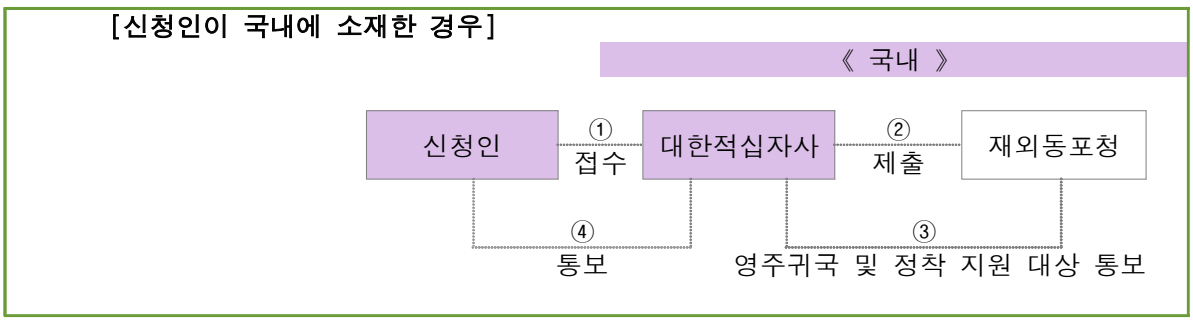

□ 2024년 선정자 수 및 선정 기준

○ **(2024년 대상자)** 270명 (예정)

○ **(선정기준)** 신청자 수가 270명을 초과할 경우,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
- (1순위)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신규 신청한 경우
- (2순위) 기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한 경우
  - 그룹 내 우선순위: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기준 고령순
    ※ 인도적 사유의 경우 금년도에는 고려하지 않을 예정임

○ **(결격사유)**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**'대한민국의 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'** 되지 않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**배제**

※ 제4조(지원 여부의 결정)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**대한민국의 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결정**을 한다.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□ 2024년 선정결과 통보방식

○ **(대상자 명단 공지)** 대한적십자사·재외공관 홈페이지 업로드

○ **(개별통보)** **신청서에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, 전자우편, 또는 주소로 선정결과를 결과를 개별 통보**할 예정이므로, 반드시 신청서 및 별지 안내사항에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

※ 부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로 인해 관련 통지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□ 신청 후 유의사항

○ **(사할린동포 사망시)** 신청을 완료한 동반가족은 **신청 후 사할린동포 사망시,** 사할린동포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**사망진단서 즉시 제출** 필요

- **신청 후 사할린동포 사망 시 원칙적으로 영주귀국 대상 미해당**

※ 사망진단서는 신청을 접수한 재외공관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제출

○ **(영주귀국)**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결정에 따라 동 사실을 통보받은 대상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**신청연도에 반드시 영주귀국** 필요

※ 신청연도에 미입국 시 차년도 이후 재신청 필요. 단, 전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입국절차가 지연될 경우는 예외로 함

○ **(지원 자격 박탈)** △신청서류 위조, △사할린동포 사망진단서 포함 필요서류 누락, 등 신청 **부적격 사유가 추후 확인된 경우,**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**자격 박탈 및 지원 즉시 중단**

※ 관련법에 따른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가능성 불배제

Ⅳ. 문의사항

Q. 사할린동포법이 개정되어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?

☞ 사할린동포법 일부법률개정안의 시행일은 2024년 7월 17일로, 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기한이 끝난 이후임. **따라서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5년부터**이며, 2025년도 선정대상자 수 및 선정기준은 다시 정하여 발표할 예정임.

Q.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?

☞ 사할린동포법상 동반가족의 범위에 **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**으로 해석

- 사할린동포법 제2조제2호상 '동반가족'의 정의 관련, △동반가족이라는 용어는 그 가족과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를 전제하는 개념이고, △사할린동포 사후에도 동반가족을 지원한다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부재하였다는 점을 고려, 상기와 같이 해석

※ '동반'의 의미 : 일을 하거나 길을 가는 따위의 행동을 할 때 함께 짝을 하다

Q.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경우 국적 보유판정 및 한국 국적취득 이후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?

☞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자녀(2세)가 **국적 보유판정을 받은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**

☞ 국적판정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**간이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**할 수 있으며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**복수국적 유지 가능**

※ 사망,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복수국적 유지 불가

① 사할린동포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
② 사할린동포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, 혼인한 후 3년이 경과되었으며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

☞ 상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동반가족(**사할린동포 3, 4세 등**)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**복수국적 불허용**

Q. 기존에 사할린동포와 함께 장애자녀가 영주귀국한 경우, 직계비속 1명이 추가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것인지?

☞ 기존에 영주귀국한 장애자녀는 사할린동포법 제2조제2항의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 1명에 포함되며,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직계비속 1명의 **추가 신청 자격 불인정**

Q.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 1명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?

☞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, **사할린동포가 신청서에 서명·동의**한 직계비속 1명만을 선정

☞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, 직계비속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**신청 이전에 사할린동포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 신청** 권고

☞ 복수의 직계비속이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사할린동포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, 모든 직계비속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
Q. 이미 영주귀국사업을 통해 귀국하였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신 사할린동포의 경우,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재신청이 가능한지?

☞ 이미 영주귀국하셨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 사할린동포는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, 신규 신청자격 불인정

Q. 사할린동포의 경우 '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,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?

☞ 러시아 신분등록청 발급 △출생증명서, △혼인증명서 등 외에도 △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·결정통지서, △국적확인서 또는 △대한민국 (구)호적 등 사할린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※ 대한민국 (구)호적의 경우, **신분정보(성명/생년월일)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**에 한함

Q. 작년에 영주귀국을 신청하였으나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음. 올해 동일한 자녀의 영주귀국을 희망하는데 재외공관에 제출한 출생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?

☞ **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이 불가**하므로, 가급적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은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**재외공관에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제출**하는 방식을 권유함

Q. 작년에 아포스티유 발급 받은 출생증명서, 혼인증명서 등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, 재발급이 필요한지?

☞ 사할린동포와 직계비속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출생증명서) 및 본인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(혼인·이혼증명서 등)의 경우는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으나,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**혼인증명서는 반드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**이어야 함

Q. 배우자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한지?

☞ 기본적으로 **배우자의 출생증명서는 필요하지 아니함**

Q. 작년에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사본을 가지고 있음. 사본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한지?

☞ 반드시 **증명서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발급**받아야 함

Q.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질병으로 당해년도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?

☞ 당해년도에 입국하지 못한 사할린동포는 **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재신청**하여야 함

Q. 영주귀국 후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하면 복지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?

☞ 소득 발생에 따른 복지 급여 지원자격 상실 여부는 **복지급여별, 소득종류·금액별로 상이**함

Q. 동반가족의 소득이 부모인 사할린동포의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?

☞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간의 생계·주거 분리 여부*, 소득인정액 금액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, 보장기관(지자체)의 구체적인 조사 후 확인 가능

* 동반 가족의 경우 **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면 동일 가구원**으로 조사 및 보장이 원칙

Q. 러시아에서 남편과 결혼하여 남편의 성으로 성명을 정정한 기혼여성임.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자격으로 영주귀국을 신청하려는데, 영주귀국을 위해서는 결혼 전 아버지의 성으로 다시 개명을 해야 하는지?

☞ 영주귀국 신청 및 국적 취득 전에 반드시 혼인 전 성으로 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님. 그러나 영주귀국 대상으로 결정되어 국적을 혼인 후 성명으로 취득하게 된 이후, **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의 가족관계등록부 교합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직권으로 성명을 정정할 수 있다**는 점을 참고 바람

Q. 기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자녀 자격으로 영주귀국을 신청하려는데, 러시아 출생증명서상의 부모의 인적사항(성명, 생년월일 등)과 부모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음. 신청접수가 가능한지?

☞ 신청인의 러시아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부모의 인적사항이 미비하더라도(생년월일 미기재 등) **영주귀국 신청은 가능**함. 그러나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러시아 출생증명서가 미비할 시 부모와의 가족관계등록부 교합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, **가능하다면 영주귀국 전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을 권고**